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1나3622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1나3622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351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욱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종덕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3. 24.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351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8~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을 1,89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15. 12. 23.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신호, 판사 오덕식, 판사 조규설